

제2810호
2021. 2. 24.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보 전 산 과 장 김 건 태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공 고

제2021-116호 : 「의료기기법」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
제2021-117호 : 장기 미 반환 차량 강제매각 공시송달	4
제2021-128호 :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6
제2021-129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시예방접종 시행 공고	9
제2021-131호 :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 및 등록 공고	10
제2021-134호 : 세운재정비축진지구 3-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2
제2021-135호 : 세운재정비축진지구 3-6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3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116호

「의료기기법」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 없음이 확인된 관내 의료기기판매업소에 「의료기기법」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02. 18.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공고기간 : 2021.02.25. ~ 2021.03.12. (15일간)

나. 공고사항: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결과 통지

다. 처분대상 업소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3302	(주)메디즈	전현호 최승규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193, 서울역 디오빌 514호 (만리동1가)
3260	(주)지메디우스	안종남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14, 바비엡-2 2층 209호 (의주로1가)
2783	DIGKOREA	우병두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27, 506A-1호 (순화동, 포스코더샵)
3288	마더코아	이영철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21길 8, 영우스타 2층 (신당동)
2609	복지연구소	장시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8가길 40, 1층 (신당동)
3337	엔와이에스	이준혁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03, 1층 (장충동1가)
3258	엠디피아	박현웅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156, 2층 103호 (신당동)
3277	패밀리컴퍼니	박성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0길 17-1, 4층 (명동2가)

라. 행정처분 내용: 의료기기판매업 영업소 폐쇄

마. 행정처분일: 2021.02.17.

바. 위반사항: 신소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사. 적용법규: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8] 행정처분기준 II.개별기준 제35호

※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 의 : 중구보건소 의약과 전화 02-3396-6413, 팩스 02-3396-8912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1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 구 관내에서 도로교통법 제 32조, 제 33조, 제 34조에 따른 주, 정차 위반으로 단속 및 견인된 후 1개월 이상 장기보관중인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 35조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 인수 및 자진처리를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미인수한 차량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강제 매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기 미 반환 차량 강제매각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02.19 ~ 2021.03.05(15일간)
3. 공고대상 : 장기 미 반환차량 2대
4. 보관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중구견인차량보관소 (☎02-2280-8376)
5. 공고내용

-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위 기간내에 중구견인차량보관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이후에는 차량은 강제 매각(폐차)처리되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 81조에 의거 범칙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양자하시기 바랍니다.

2021 . 02 . 19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공 고 대 상 차 량

연 번	차량번호	차명	차종	보관일시	소유자명	소유자주소
1	87보3813	포터	2.5톤미만	2020-04-23 10:10	김종*	강원도 양양군 간현면 주청2길 5
2	24구3278	모닝	경차	2020-10-07 11:22	장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19길36(화양동)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128호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의 기준 등) 및 같은법 제94조(공사의 중지 등)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공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처분제목 :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

나. 처분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다. 처분내용 : 붙임 참조

라. 공고기간 : 2021. 2. 22.(월) ~ 2021. 3. 10.(수)

마.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바. 공고대상자 및 내역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 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 원상복구 명령						
당 사 자	성명(명칭)	김*태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왕십리로39길 30, **2동 **3호(신당동, 한***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아파트 세대 앞 복도(공용부분)에 현관문 설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원상복구 명령 (범위 : 문짝, 문틀 전체)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행위허가의 기준 등), 같은법 제94조(공사의 중지 등), 같은법 제99조(벌칙)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중구청	부서명	주택과	담당자	김원덕
		주소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 (예관동) 본관 6층			전화번호	02-3396-5715
		전자우편	2012112073 @junggu.seoul.kr			팩스번호	02-3396-9087
	제출기한	2021년 3월 10일까지					

2021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 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 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02-3396-57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제 2021-129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시예방접종 시행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1. 예방접종 대상 백신: 코로나19 예방접종

2. 예방접종 대상: 전 국민

* 임신부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경우 임상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며, 백신이 순차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종 확대 시행(시기별 접종 대상자 별도 안내 예정)

3. 임시예방접종 기간: 2021년 2월 ~ 2021년 12월

* 임시예방접종사업 종료 시 별도공지 예정

4. 임시예방접종 장소: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센터, 위탁 의료기관

* 위탁의료기관 및 지역예방접종센터는 백신 수급현황에 따라

세부접종 대상·일시·장소 등 추후 공고함

* 일부 접종 대상자(고위험19 환자 치료 병원 종사자,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근무 보건인료인,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등)의 경우 자체접종, 접종기관 내원 또는 방문접종 시행

5. 참고사항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자발적 동의하에 진행되며,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 및 백신 사용 효율화를 위해 접종기관 방문 전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예약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 시스템 정비 후 재안내

-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http://ncv.kdca.go.kr/>) 및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 통해 관련정보 지속 제공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131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 및 등록 공고

직인이 분실됨에 따라 부서에서 사용하는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을 폐기 및 등록 사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23.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

2. 폐기공인

- 보건위생과 재무관 공인명 및 인영

3. 등록공인

가. 규 격 : 2.0cm × 2.0cm

나. 내 역

- 보건위생과 재무관 공인명 및 인영
- 보건위생과 분임재무관 공인명 및 인영

다. 사용일자 : 2021. 2.

라. 사용용도 : 예산 집행 시 사용

[별지 제2호서식]

표 면

직인폐기신고서

회 계 명 : 일 반 회 계 (폐기당시인영)

관 서 명 : 중 구 청 보 건 위 생 과

직 명 : 서 울 특 별 시 중 구 보 건 소 재 무 관 인

망실

사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2021년 2월 22일까지

규 격 : 세 로 5cm 가 로 16cm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당시인영”란에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 회 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이 면

(폐기사유)

표기와 위의 사항을 인증함

2021년 2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21-134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3.19.), 제2014-119호(2014.3.27.) 및 제2019-185호(2019.06.07.)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60호(2015.07.30.)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1년 02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칭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나. 위치및면적 :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275-3 일대 / 2,723.1㎡
-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코리아신타(주) 대표 백인균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혜성2빌딩 10층
- 라. 사업기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54개월
- 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5.07.30.

2. 공람개요

- 가. 공고기간 : 2021.02.24. ~ 2021.03.10.(14일간)
- 나. 공람장소 :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53)
- 다. 주요 변경내용 : 사업시행자, 대지면적 및 건축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 변경 : 더센터시티제이차(주) → 코리아신타(주)
 - 대지면적 변경 : 2,732.3㎡ → 2,723.1㎡
 - 건축계획 변경 : 근린생활시설 일부 부대시설 변경, 생활형숙박시설 유니트 변경
- 라.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 마. 공고방법 : 구보 게재

3. 기타사항

-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본 공고내용을 개별통지하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21-135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6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3.19.), 제2014-119호(2014.3.27.) 및 제2019-185호(2019.06.07.)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6-28호(2016.03.30.)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6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1년 02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칭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6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나. 위치·면적 :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97-8 일대 / 3,814㎡
-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코리아신타(주) 대표 백인균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혜성2빌딩 10층
- 라. 사업기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54개월
- 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6.03.30.

2. 공람개요

- 가. 공고기간 : 2021.02.24. ~ 2021.03.10.(14일간)
- 나. 공람장소 :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53)
- 다. 주요 변경내용 : 사업시행자, 대지면적 및 건축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 변경 : 더센터시티제이차(주) → 코리아신타(주)
 - 대지면적 변경 : 3,851㎡ → 3,814㎡
 - 건축계획 변경 : 근린생활시설 일부 부대시설 변경, 생활형숙박시설 유니트 변경
- 라.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 마. 공고방법 : 구보 게재

3. 기타사항

-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본 공고내용을 개별통지하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